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6. 1.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041,500	21	3,600,700
2	2,103,300	22	3,733,600
3	2,166,000	23	3,865,300
4	2,228,500	24	3,997,500
5	2,291,500	25	4,129,400
6	2,354,400	26	4,261,900
7	2,416,600	27	4,400,100
8	2,478,600	28	4,538,000
9	2,495,600	29	4,682,100
10	2,516,700	30	4,826,800
11	2,538,300	31	4,971,100
12	2,585,900	32	5,115,200
13	2,657,500	33	5,261,600
14	2,773,700	34	5,407,500
15	2,889,700	35	5,553,600
16	3,006,200	36	5,699,100
17	3,121,000	37	5,825,700
18	3,241,500	38	5,952,500
19	3,361,200	39	6,079,500
20	3,481,000	40	6,205,700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